

지역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Together
CNU

2027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석사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6. 3.

1. 전형일정

구분	일시(기간)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26. 9. 28.(월) 09:00 ~ 10. 2.(금) 18:00	◆ 전남대 법전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jnu.ac.kr)	
서류제출	2026. 9. 28.(월) 09:00 ~ 10. 6.(화) 18:00 ※ 도착분에 한함	◆ (우)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제2학생마루 입학처	
1단계 합격자 발표	2026. 11. 9.(월)	◆ 전남대 법전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jnu.ac.kr)	
면접	가군 2026. 11. 14.(토)	◆ 전남대학교 지정장소	
	나군 2026. 11. 21.(토)		
최초 합격자	발표 2026. 12. 11.(금)	◆ 전남대 법전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jnu.ac.kr)	
	등록 2027. 1. 4.(월) ~ 1. 5.(화)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2027. 1. 7.(목)		
	등록 2027. 1. 11.(월) ~ 1. 12.(화)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2.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구분	모집인원	비고
가군	일반전형 51명	
	특별전형 9명	
나군	일반전형 60명	
계		120명

※ 결원인원 보충(정원 외 선발)은 확정된 결원에 따라 최대 10%(12명) 선발함

3. 지원자격 및 선발유형

□ 지원자격_공통사항

다음 ①~③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 ①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2027년 2월 말까지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③ 응시일 기준 2024. 11. 1. 부터 2026. 9. 27. 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다음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주관 기관에서 점수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함)

구분		TOEIC	TEPS	TOEFL(IBT)
최저기준 점수	일반	750	285	85
	중증 청각장애인	380(듣기 제외)	170(듣기 제외)	45(듣기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구 2, 3등급)은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만 환산하여 반영

□ 지원자격_특별전형

구분	대상자
신체적 배려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경제적 배려대상	<p>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구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가구원 ※ 순수경제적취약계층은 ①~② 해당함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구원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 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의 가구원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가구원 ※ 가구의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사회적 배려대상	<p>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 등급 4급이상 판정을 받은 자와 그 자녀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구분	대상자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⑦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본인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자 ⑨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교 졸업자										
구분	지원자격										
12년 과정 (초중고 전 과정)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6년 과정 (중고 전 과정)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p>◆ 농어촌 지역 인정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다만,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등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는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는 제외 <p>◆ 지원자격 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 중 재학 및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 기록과 일치해야 함 ○ 2개 이상의 초·중·고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되, 동일한 농어촌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자격이 있음 ○ 초·중·고교 재학 기간 중 주민등록표 등본상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된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격이 없음 ○ 초·중·고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초·중·고교 재학 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4a460;">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4a460;">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부모의 사망·실종</td> <td>·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부모 양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 이후부터는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td> </tr> <tr> <td>부모의 이혼</td> <td>·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td> </tr> <tr> <td>입양자</td> <td>·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td> </tr> <tr> <td>기타*</td> <td>·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기타 : 부모 중 일방이 장기여행·중병·심신상실·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행사 금지 가처분, 친권상실 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부모의 사망·실종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부모 양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 이후부터는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부모의 이혼	·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입양자	·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기타*	·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기타 : 부모 중 일방이 장기여행·중병·심신상실·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행사 금지 가처분, 친권상실 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구분	기준										
부모의 사망·실종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부모 양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 이후부터는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부모의 이혼	·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입양자	·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기타*	·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기타 : 부모 중 일방이 장기여행·중병·심신상실·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행사 금지 가처분, 친권상실 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선발유형별 선발방법

구분	비율	기준
비법학사	모집인원의 1/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 이외의 학문영역 학사 취득자(예정자) ○ 법학사와 비법학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하나만 선택. 중복 선택 불가 ○ 주전공이 비법학이고, 법학을 부전공한 경우는 비법학사로 인정 ○ 법학이 주전공이고 비법학을 부전공한 경우 법학사로 인정
타 대학 출신자	모집인원의 1/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 학사편입자는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함 - 타 대학의 학사학위 후 전남대학교에 학사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타 대학에 학사편입한 경우 전남대학교 출신으로 함 ○ 전남대학교 또는 타 대학 학사 복수 학위자는 하나만 선택. 중복 선택 불가 ○ 독학사 등 학위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
지역인재	모집인원의 1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지역 소재 대학 학사 취득자(예정자) ○ 호남권 지역에 본교가 있더라도 타 지역의 캠퍼스 졸업자는 대상이 아님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독학사 출신자는 대상이 아님 ○ 이 밖의 기타 사항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7%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
순수경제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입학생의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가구원

◆ 선발유형 적용 예시

구분		<출신대학>	본교/타교 적용	학부성적 적용	법학사 적용
학사학위 1개	(1) ㉞대학 신입학→졸업	㉞대학	㉞대학	㉞대학	㉞대학
	(2) ㉞대학 신입학→ ㉞대학 일반편입→졸업	㉞대학	㉞대학	㉞대학	㉞대학
학사학위 2개	(3) ㉞대학 졸업→ ㉞대학 학사편입*→졸업	㉞대학 또는 ㉞대학	<출신대학>으로 선택한 대학을 적용	<출신대학>으로 선택한 대학을 적용	<출신대학>으로 선택한 대학을 적용
	(4) ㉞대학 졸업→ ㉞대학 신입학→졸업	본인 선택			

- 단, (3) 학사편입*은 최초 졸업 대학을 본교로 적용함
- 최초합격자 선발에서 「순수경제적취약계층」 3명을 특별전형 지원자 중에서 우선 선발함
- 최초합격자 선발에서 「지역인재대상자」 18명을 가군에서 9명(특별전형 포함), 나군에서 9명 우선 선발함
- 한 명의 합격자가 두 개 이상의 선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선발유형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함
- 가군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인원 중에 「비법학사/타 대학 출신자/지역인재대상자」 해당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가군 전체에서 선발유형 및 선발비율을 적용함
- 「비법학사/타 대학 출신자/지역인재대상자」 선발비율은 가군과 나군을 분리하여 적용함. 선발유형 및 선발비율을 해당군에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군의 예비순위자 중에서 전형총점 순으로 선발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4. 전형방법

기본사항

- 가군 일반전형, 가군 특별전형, 나군 일반전형으로 분리 선발함
-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 전형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1단계(3배수 이내 선발)				2단계		합계
	공인영어 성적	법학적성 시험	학사성적	서류평가	논술	면접	
배점	P/F	150	150	100	50	50	500
명목반영률		30%	30%	20%	10%	10%	100%

평가방법

※ 2027학년도 모집요강 공고(2026년 6월 중 예정)

5. 제출서류

공통 및 특별전형 제출서류

※ 2027학년도 모집요강 공고(2026년 6월 중 예정)